

본인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창의의 시작!

문서번호	일자리경제담당관-125001
결재일자	2016.1.4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방침번호	동작구청장 방침 제1호

주무관	시장활성화팀장	일자리경제담당관	부구청장	동작구청장
심재화	이수희	민영기	정연찬	01/04 이창우
협조	★가정복지과장 보육관리팀장			
	정정숙 김정원			

전통시장·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 운영계획



일자리경제담당관

전통시장-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 운영 계획

전통시장과 어린이집간 식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함

I 배경 및 추진경위

추진배경

- 2015. 9. 14. 『구청장 요청사항 제45호 '15-208호』
 -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후 성과창출 방안 모색.
- 2015. 10. 21. 시장상인과 간담회시 건의사항 :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요청

추진 경위

- 2015. 10월. 식자재 납품관련 타구사례 조사

※ 중랑구-전통시장-어린이집-전통시장 식자재 협약(2015.2.12)
- 전통시장 5개소 23→88개 점포, 어린이집 39→139개소 확대 참여
- '14.11 ~ '15.10 기준 누적매출액 275백만원 (월매출 약 3천만원)

- 2015. 10. 2 ~ 11. 4 식자재 공동구매 관련 어린이집 설문조사 실시(114개소 참여)
 - 설문조사 참여 어린이집의 70%(80개소)가 전통시장에서의 식자재 구매 참여의사가 있음으로 나타남 ※가정복지과 조사
- 2015. 11. 19 전통시장-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 간담회 개최
 - 전통시장과 어린이집간 식자재 공동구매 참여 합의, 구매 품목 논의.
- 2015. 12. 2~9 시장별 참여점포 수요조사
 - 카드결제·배송가능 등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 확인
 - 조사결과 : 총 27개 점포(남성 8, 상도전통 5, 남성역골목6, 성대전통시장 8)

- 2015. 12. 11 전통시장-어린이집간 최종 설명회 개최
 - 1차 공동구매 품목 선정, 단계적으로 품목 확대하기로 함
 - ※ 선정품목: 육류(돼지·소·닭고기), 과일, 떡
- 2015. 12. 17 전통시장-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 협약식 개최
 - 전통시장 4개소 상인회 임원단, 국공립·민간·가정어린이집연합회

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】

- 동 작 구 : 식자재 위생 원산지 표시 등 참여점포 사후 관리
지속발전 위한 행정적 지원
- 어린이집 :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
- 전통시장 : 품질 좋고 위생적인 식자재를 어린이집에 납품
안전한 식자재와 정확한 배송을 통해 전통시장 신뢰도 확보

- 2015. 12. 21 ~ 24 : 시장별로 어린이집과 참여점포간의 설명회 개최
 - 개최목적 : 실질적 구매계약 당사자인 점포주와 어린이집관계자간
공동구매에 따른 세부내용 확인 및 조율
 - 시장권역별 참석현황

구 분	총인원	12. 22(화)			12.24(목)
		남성	남성역골목	성대전통	상도전통
참여시장					
점포주	27명	8명	6명	8명	5명
어린이집	54명	12명	11명	21명	10명

- 설명회 결과
 - 납품기준에 맞는 구비서류 상호확인 ⇒ 거래명세서, 구매계약서 등
 - 어린이집의 조리환경에 적합한 식재료 현황설명 ⇒ 재료크기, 재료손질 등
 - 발주방법, 납품품목, 배송시간 등은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개별 계약시 상호합의

- 2015. 12. 22 ~ 31 : 참여희망어린이집과 참여점포 개별 계약
 - 점포별 개별계약 후 계약현황을 상인회에서 수합하고, 자료를 일자리경제
담당관으로 제출

■ 사업기간 : 2016. 1월부터

■ 참여대상 :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어린이집

- 1단계 전통시장 4개소, 희망 어린이집 우선 추진, 향후 확대추진
 - 참여점포 : 4개시장 27개소
 - 참여의사가 있는 어린이집 : 총 100개소(구립 40, 민간 20, 가정 40)
- ※ 관내 점포 및 어린이집 현황

(단위:개소)

전통시장					어린이집			
총계	남성	남성역골목	상도	성대	총계	구공립	가정	민간
326	140	57	73	56	242	40	106	96

■ 대상품목 : 육류(닭포함), 과일, 떡

- 1차로 어린이집 선호도가 높고 품질관리가 가능한 3개 품목 선정, 향후 채소, 생선, 제과 등 확대추진
- ※ 품목별 점포 : 육류(14개소), 과일(8개소), 떡(5개소)

■ 사업방법

- 전통시장별 27개 참여점포가 식자재를 어린이집에 납품
⇒ 4개 전통시장과 어린이집의 참여대상을 권역별로 안배

(단위:개소)

구분	상도전통시장	성대전통시장	남성역골목전통시장	남성전통시장
권역별분류	상도1,2동 노량진1,2동	상도3,4동 대방동,신대방1,2동	흑성동 사당 1,4,5동	사당2,3동
어린이집	69	93	46	34

-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, 어린이집 별로 희망점포와 개별 계약체결

운영 방향

1. 전통시장과 지역골목상권과의 상생발전 지향
2. 전통시장의 성실한 납품과 협약이행으로 신뢰도 제고
3. 모니터링,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 감독 철저
4. 전통시장 점포 및 어린이집 개소 및 구매품목 확대

1. 전통시장과 지역골목상권과의 상생발전 지향

- 어린이집에서 기존 거래중인 점포의 변경지양 및 계속 구매 안내
- 인근에 전통시장이 없는 어린이집은 기존골목상점을 이용하도록 홍보

2. 신선한 식재료의 납품과 성실한 협약이행으로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

 합의된 공동구매 납품기준에 맞는 식재료 제공

○ 공동구매 납품기준 준수

- 품목 : 육류, 청과, 떡
- 발주방법 : 월별 · 주차별 주문, 전화·팩스로 주문
- 구비서류 : 거래명세서(품목, 규격, 단위, 수량, 단가,공급가액, 세액, 원산지)
 - 축산물 : 도축검사증명서,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· 과일 : 원산지 표시·떡 : 쌀의 원산지 표시
 - ※ 증빙자료의 문제로 적은 수량 구매시에도 위의 서류 필요
- 결제방법 : 카드결제 가능점포(현금결제 불가), 월별/주차별 결제(협의가능)
- 배송방법 : 매일 아침 당일 배송이 원칙 ※ 식자재 배송시마다 증빙서류 제출

■ 공동구매 참여점포에 대한 자격 사전 확인

● 상인회에서 공동구매 희망 참여점포 사전 조사

- 축산물 납품 시 원산지 공개 및 등급판정 제출이 가능한 업체
- 대금결제는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※ 현금 결제 불가
-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시간대 식자재 배송이 가능한 업체
- 어린이 식재료 레시피에 맞는 재료 준비가 가능한 업체 등

● 신청자격 제외대상

- 공동구매 납품기준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
- 최근 1년 이내에 불성실한 납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

■ 협약에 따른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

● 계약형태 : 참여점포와 어린이집간의 개별계약

-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6개월 단위로 1회 연장 가능
- 당일 배송이 원칙이나 각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배송일, 배송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

● 계약내용

-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식자재의 납품
 - 관내의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품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
 - 원산지표시, 품질보증, 배송 등의 납품 기준에 대한 이행에 만전
- 납품방법, 대금지급, 계약기간, 배상책임, 계약해지 등 이행방법

● 계약해지 :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

-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내에 요구한 납품을 못하거나 거부할 때
 - 점포의 귀책사유로 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식재료 검사 결과 신선도, 품질 등에 이상 발생한 경우
 - 급식품의 원산지 표시 및 제출 서류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
- ⇒ 점포도 어린이집에서 계약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거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
- 특별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해지할 때에는 종료 1개월 전에 통지

3. 모니터링, 만족도 조사 등의 관리 감독 철저 및 경쟁력 강화

■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

● 식재료 공동구매 모니터링단 운영

- 일 시 : 2016. 1월부터
- 구 성 : 부모모니터링단 (10명), 일자리경제담당관(1명)
- 운영방법 : 가정복지과에 시행하고 있는 부모모니터링단 협조
- 운영내용
 - 급식재료 품질모니터링으로 참여점포의 품질관리
 -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일정에 맞추어서 어린이집, 참여점포 방문을 통해 주기적 품질관리

● 정기간담회 실시

- 일 시 : 분기별 실시(3, 6, 9), 4분기는 평가로 대체
- 대 상 : 공동구매 참여 점포 및 어린이집
- 방 법 : 참여어린이집을 시장별로 권역을 나누어 실시
- 내 용
 - 사업내용 점검 및 건의사항 수렴
 - 품목 확대 및 신규 참여점포 발굴

● 만족도 조사

- 일 시 : 2016. 11월 중
- 대 상 : 공동구매 참여 점포 및 어린이집
- 방 법 : 점포·어린이집별 별도 설문조사지를 활용한 대면조사
- 내 용
 - 점 포 : 공동구매 참여 만족도, 수익증대 여부 등
 - 어린이집 : 납품식자재의 품질, 참여점포에 대한 만족도, 희망추가품목 등

○ **공동구매사업 평가**

- 일 시 : 매년 12월
- 대 상
 - 전통시장별 상인회장, 어린이연합회 회장단
 - 시장별 참여점포주 및 참여어린이집 관계자 대표 각2명씩
- 내 용
 - 공동구매 사업확대 방안 모색
 - 각 시장별 실적 보고 및 시장별 미담사례 발표
 - 1년간 운영에 따른 총괄평가 및 문제점 대안방법 논의
- 결 과
 - 평가에 따른 내용 분석하여 다음년도 운영에 참고하여 개선방안 수립

○ **실적관리 : 담당 부서별 이원화 관리**

보고부서	참여점포 → 일자리경제담당관	참여어린이집 → 가정복지과
보고내용	계약대상, 구매품목, 구매실적 등	
관리방법	매주 금요일 구매현황 수합 및 참여 독려(안정화시 월1회 보고)	

교육을 통한 상인역량 함양으로 내적경쟁력 강화

- 기 간 : 2016. 2월~
- 대 상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(대상별 맞춤형 교육)
- 내 용 : 친절, 의식혁신, 경영마인드, 마케팅, 상인조직 활성화 등

구 분	교육내용	추진방법
일반상인	친절, 의식혁신, 마케팅, ICT 등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 단계별 교육
상인임원	일반교육, 리더십, 조직활성화 등	상공회 등 활용, 구 자체 강좌 운영

4. 전통시장 점포 및 어린이집 참여개소 및 구매품목 확대

4개 전통시장 미참여 점포 가입 유도 및 참여점포수 및 품목 확대

- 상인회 회의 및 교육시 공동구매 참여 독려
 - 공동구매 참여로 발생한 수익창출 등 효과 홍보
 - 식자재 납품에 따른 준비사항 사전 교육: 카드결제, 위생청결,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
- 분기별 간담회시 새로운 품목(생선, 채소, 쌀 등) 및 참여점포 발굴
 - 품목 선정시 어린이집의 의견 수렴, 어린이집 기준에 맞는 재료 납품

전통시장 공동구매 참여 어린이집수 점진적 확대

- 어린이집의 전통시장 구매 불편사항 최소화
 - 주문방법 다양화(문자, 전화, 팩스 등) 및 점포의 소량 배송 및 증비서류 구비 철저 등
- 긴급시 발주변경 및 주말발주, 접근성, 점포선택의 폭 다양화 등 전통시장 공동구매의 강점 홍보

V 2016년 추진일정

사 업 명	1	2	3	4	5	6	7	8	9	10	11	12
식자재 공동구매 시행	-----											
급식재료 품질감시단 운영			모집	실시								결과보고
만족도 조사											조사	
간담회 및 공동구매사업 평가			간담회			간담회			간담회			평가

홍보계획

- 구립·민간·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월례회의시 참여 홍보
 - 전통시장 공동구매 취지, 전통시장의 구매 강점 등
- 언론매체 적극활용 홍보
 - 전통시장 식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홍보
 - 시장상인재능기부, 미담사례 발굴을 통한 전통시장 인식 개선

행정사항

- 공동구매에 따른 공통표준 양식(계약서, 거래명세서) 제공 : 일자리경제담당관
- 급식재료 품질감시단 운영 및 어린이집 참여 안내 : 가정복지과

- 붙임 :**
1. 식자재 공동구매 참여 점포 명단 1부.
 2. 공동구매 표준계약서 1부
 3. 거래명세서 1부. 끝.

전통시장·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 참여 점포 명단

연번	시장명	점포명	품목	상인명	주소	비고
1	남성시장	늘봄한우마을	정육	장애순	사당동 88-3	
2	남성시장	한우축산	정육	김재영	사당동 92-2	
3	남성시장	치킨벨리하림	닭	차은숙	사당동 92-14	
4	남성시장	소담떡집	떡	강영섭	사당동 92-2	
5	남성시장	우리떡사랑	떡	박영기	사당동 92-2	
6	남성시장	농부의아들	과일	김의섭	사당동 130-6	
7	남성시장	비타민천국	과일	박병학	사당동 91-167	
8	남성시장	해돋이청과	과일	최광연	사당동 92-2	
9	상도전통시장	농심축산	정육	김미옥	상도동 463-2	
10	상도전통시장	웰빙정육	정육	박홍규	상도로 37길 62	
11	상도전통시장	전주닭집	닭	김해순	상도로37길 51	
12	상도전통시장	불편한채소	과일	정남일	상도로37길 56	
13	상도전통시장	충만상회	과일	박시인	상도로37길 55	
14	남성역골목시장	도두람축산물	정육	김운경	사당로16가길15	
15	남성역골목시장	여물소	정육	김행숙	사당동 268-36	
16	남성역골목시장	태성축산물백화점	정육	박춘곤	사당동 268-39	
17	남성역골목시장	하림닭집	닭	추교만	사당동 267-4	
18	남성역골목시장	유진떡집	떡	임이동	사당동 267-3	
19	남성역골목시장	푸른청과	과일	김희겸	사당동 220	
20	성대전통시장	대성축산	정육	김상철	상도동 324-14	
21	성대전통시장	진흥한우	정육	구상희	상도동 317-12	
22	성대전통시장	하이축산	정육	윤경태	상도동 317-1	
23	성대전통시장	한냉축산	정육	장세종	상도동 326-11	
24	성대전통시장	낙원떡집	떡	오성주	상도동 316-5	
25	성대전통시장	민속떡집	떡	박희진	상도동 324-43	
26	성대전통시장	이래사랑마트	과일	안만길	상도동 310	
27	성대전통시장	푸른청과	과일	윤혁	상도동 324-68	

물품 공급계약서

구매자 _____어린이집과 공급자 _____점포는 다음과 같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다.

- 다 음 -

제1조(목적)

_____점포는 _____어린이집이 구매 요청한 급식에 필요한 물품을 신의와 성실로 납품한다.

제2조(납품)

1. _____어린이집은 _____점포가 납품할 물품을 전화, 문자, 팩스, 방문 등으로 오후 5시까지 발주한다.
2. 납품할 수량, 기일 및 장소는 _____어린이집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.
3. _____점포는 _____어린이집이 구매요구한 물품 중 품질된 품목은 갑의 합의하에 대체납품을 할 수 있다.
4.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한 후 _____점포는 _____어린이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제3조(품질 및 품질 검사)

1. _____점포는 _____어린이집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_____어린이집이 검수 시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_____점포의 동의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.
3. 검수시 식품의 파손, 변질, 수량부족, 결품 등으로 급식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, 어린이집은 _____점포에게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공급을 할 수 있다.

제4조 (가격)

_____점포는 _____어린이집에게 납품하는 식자재의 단가를 2주일 단위로 조정하여 갑에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_____어린이집과 상호협약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대금지급)

1. _____어린이집은 _____점포에게 납품마감을 월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신용카드(체크카드) 결제한다.
2. 결제는 매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상호협약하여 대금지급기간, 결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2016. ? . ? ~ 2016. ? . ? 까지로 한다. 단, 이견이 없을 경우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보장)

_____어린이집과 _____점포는 본 계약에 할게 된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응분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손해배상책임)

_____어린이집의 급식자가 _____점포가 납품한 식재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, 병원의 정밀 검사 후 _____점포가 납품한 식품이 그 원인이라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_____점포는 갑에 대하여 치료비 기타 일체의 보상비용 및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9조(계약의 해지)

1. _____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_____점포에 대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(1)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 내에 _____어린이집이 요구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
 - (2) _____점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_____어린이집의 급식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
 - (3) _____점포가 _____어린이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_____점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(1) _____점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거래하지 않을 때
 - (2) 갑의 신용 등의 부족으로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3. _____어린이집과 _____점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용어의 해석)

본 계약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,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제11조(분쟁의 해결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_____어린이집과 _____점포는 상호간의 협의로 조정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_____어린이집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의 소송으로 처리한다.

본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5년 월 일

주 소 :
상 호 :
대 표 자 : (인)

주 소 :
상 호 :
대 표 자 : (인)